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현장에서 경험한 동물학대 대응의 한계 및 개선방안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양 은 경

1. 동물보호명예감시원제도의 의의

가. 추진배경

- 2006년 이계정의원안, 공성진의원안, 정부안에 의한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 도입(신설) (동물보호법, 시행 2008.01.27.)

* 정부안의 주요내용

: 마.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 도입(안 12조 신설)

(1)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감시와 계도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이 제도의 도입으로 민간 전문가 등의 감시활동이 활성화되어 동물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동물보호감시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명칭 변경 (동물보호법, 시행 2012.2.5.)
- 서울시에서는 2013년부터 해당 제도 운영

나.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41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1)]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자격 및 위촉 등)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다. 직무

-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2)]

---

1) 동법 제40조(동물보호감시원)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는 반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위촉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위촉하지 않는 자치구가 많고 자치구별 인원편중이 발생한다. (관악구, 강북구의 예)

2) 실제로 명예감시원에 의하여 지하철 불법 토끼판매·동물학대 등의 현장제보 및 정보제공이 있었으나 적절한 후속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경과 등이 공유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사례를 찾을 수 없음.

- 제14조 제3항[3]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 보호 지원

라. 현황 및 활동실적[4]

1) 현황

- 서울시 25명, 자치구 12개구 67명 : 총 92명 ('19.05.31.기준)

-종로2, 용산3, 동대문6, 강북20, 도봉4, 은평1, 서대문1, 구로3, 금천1, 동작2, 관악21 , 송파3

2) 활동실태

- 활동기간 : '18.06.21~18.12.10. 제7회 지방선거(6.13) 일정으로 홍보활동시기 연기 (지도·단속은 선거와 관계없이 실시)
- 활동장소 : 주요공원, 하천변(산책로), 아파트, 지하철역사, 대학교(어학당), 동물관련업소[5], 자치구 반려동물 행사장 등
- 활동내용
  - 동물등록제, 반려견주 준수사항(펫티켓), 유기동물 입양 등 홍보, 유학생 대상 반려동물 동반출국 방법 안내 리플릿 비치(주요대학교)[6]
  - 반려견주 준수사항 및 동물관련업소 민관합동 현장 지도·단속 참여
  - 자치구 반려동물 축제행사시 동물보호 시민교육 진행 및 홍보

마. 자격 및 활동비 지급

---

3) ③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0.>

1. 법 제7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2. 법 제8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운송과 반려동물 전달 방법에 대한 지도·감독

3의2. 법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3의3.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

4.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지정되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감독
5. 법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의 시설·인력 등 등록 또는 허가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7. 법 제39조에 따른 조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확인·지도
8.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지도
9.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4) '18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결과보고

5) 동물관련업소(동물판매업, 동물보호센터)

- 명예감시원 역할 : 업소별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서울시 점검실적

참여 횟수	참여 인원	점검 업소	위반 업소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점검	위반	점검	위반
2	4	3	0	1	0	2	0

▸자치구(양천) 점검 지원 : 1회, 2명

6) 해외 유학생의 반려동물 유기 예방을 위한 유학생 대상 반려동물 동반출국 방법 안내 리플릿 비치(대학교), 방학 중 활동이 진행되어 학생들이 이미 귀국한 상태에서 실효성에 의문

1) 자격

- 아래 기준 중 하나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자격기준[7]
① 동물보호 관련 민간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②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④ 「고등교육법」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⑤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⑥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교육방법 : 농식품부 지정 교육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실시
  : 온라인교육(6시간) 이수 후 평가점수 70점 이상 취득시 이수 인정

2) 활동비 지급 : 50,000원(1일 4시간 이상 활동시) / 1인당 연간 50일 한도

2.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의 문제점

가. 중앙정부가 동물보호 업무 전담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동물보호 업무 전담부서가 있는 유일한 지자체임에도 전담인력·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활동의 제한

나. 법적으로 위촉 가능 인원이 정해져있으나(서울시 경우 450명) 실제와 격차
→ “위촉 자체가 공무원의 또 다른 업무로 부담을 느끼고 있음”[8]

다. 감시원과 명예감시원의 소통부족

- 순환보직으로 인한 감시원 업무의 전문성 갖추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오래 활동한 명예감시원을 지도하기가 ”부담스럽다”.
- 서울시와 자치구 명예감시원의 업무가 중복되고 상호소통 체계가 없다.
- 서울시는 활동초기 O.T.에도 참석률 저조 및 관심 저조

7) ⑥에 해당하는 위촉이 많아 세부적인 전문성이 부족함
8) 위클리벳 44회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아시나요”

- 자치구는 그나마 활동교육이 형식적으로 흐름

라. 업무범위의 모호[9)]

- “현장활동 시 권한 없어 한계 직면”
- “동물등록제 및 길고양이 전단지 배부, 합동홍보캠페인 등 기대했던 고유 업무가 아닌 형식적 업무”
-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느낌”
- “제도가 없어져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다”

3. 동물보호명예감시원제도의 개선방안

가. 법조항 개정 : 동보법 제41조 제1항 “...위촉할 수 있다 → ...위촉해야 한다”

나. 동물보호소, 판매업소 등 감시원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시 관계법령 및 사전체크리스트 숙지 등 전문성 습득

다. 현재 명예감시원 직무교육[10)]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존재

라. 동물보호감시원 · 명예감시원 소통 매뉴얼구축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의 연속성이 공무원의 단기순환근무에 대한 보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마.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서울시·자치구 협의 체제로 정보 공유 및 업무 이원화

바. 시간임기제공무원[11)](동물보호분야) 채용으로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특사경[12)] 업무 전담하도록 함

---

9) 카라 활동사례집(2015년)에서 발췌

10)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5조(교육) 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법령
2.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이해
3.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사육, 관리 및 질병 예방
4. 동물복지이론 및 국제적인 동향
5. 그 밖에 동물의 구조, 관계법령 등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1) 주 15~35시간을 일하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오전·오후·야간·격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

12) 현재 서울시에 동물보호업무 관련 특별사법경찰은 지정되지 않아서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경찰에 요청하고 있음

사. 동물복지사제도 신설

: 아동복지사와 유사한 '동물복지사제도'를 동물보호법 규정에 추가하여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제1항, 제2항처럼 동물보호법상으로도 중앙동물보호전문기관, 지역동물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하여 풀뿌리 동물보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각 기관에서 동물복지사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

※ 영국 동물복지사제도[13)]

아. 동물학대 대응업무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보다 **경찰 내에 동물보호 전담관(동물경찰관)이 운영되어 24시간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체제[14)]등으로 가야 한다.**

- 끝 -

13) 영국의 동물복지사(Animal Welfare Officer)는 동물보호보안관(RSPCA Inspector)의 예비채용 단계의 용어로 위의 제안과 다른 분야이다.

14) 홍콩, 네덜란드 등이 24시간 신고제를 운영한다.